

1. 개정이유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제3항)

- 영 제15조에 따른 이·통장의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 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 서류 정정·변경 방법 규정

나. 등·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 등·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등

다.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서식)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기록사항을 정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 단서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다.
- ④ 영 제4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3조의2제4항,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입(재등록 포함)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 []주민등록(신규등록)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출력일	
세대주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남/여)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입자 또는 주민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남/여)	거주 여부 확인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확인자 의견란	
(이장·통장 확인경위 및 의견진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전입·주민등록 신고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이장·통장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이·통장 사후확인 사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정 동의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데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유의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이장·통장의 정확한 사후확인이 허위 전입신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3. 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의견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에 대해 신고인이 층수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사후확인 시 동 번호 및 호수를 확인하여 확인자 의견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즉시
-------	------	-----------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대상자 (총 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 제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 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과의 관계' 칸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해당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일시	처리 기간 14일
-------	------	--------------

	[] 제한신청자 본인	[] 세대원, 직계존비속	[] 제한대상자
해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 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연락처	

해제 대상자	성명	제 한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 한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 한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 한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이
예
로

해제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제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해제신청인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자의 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등 제한 신청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 직계존비속 및 제한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말소자 초본 포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 해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한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은 해제 신청인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제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신청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그 제한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한 해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한신청자와의 관계’ 칸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해제대상자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 동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	------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 해제 대상자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일	제한 해제 신청 사유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연락처	

※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대상자의 제한 해제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동의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한신청자의 사망 후 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제한대상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제한신청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한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제한대상자의 제한 해제 신청은 반려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법인·단체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	---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 열람: 1건 1회 300원 - 교부: 1통 4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1. 신청인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2.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사항	확인 서류 1 []	확인 서류 2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자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한 자 (법인·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유의 사항

1.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할 때에는 자필로 한글 성명을 써야 합니다.
2. 법인·단체 신청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습니다.
3.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의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7.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마.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기록사항을 정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u>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및 해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 단서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다.</u> <u>④ 영 제4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u>